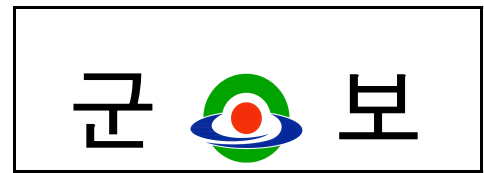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78호 2019. 7. 15.(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833호)
-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9-841호)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84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포상의 종류와 대상, 방법을 정비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 추가

- 기존 포상 종류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친절공무원 포상과 공로상을 추가(안 제4조)

- 나. 포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부상의 종류를 상금, 상장, 기타 부상에서 상패, 상품권으로 확대하고 퇴직 직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9조)
- 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전자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10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oneroa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총무과(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 054-650-6082, 팩스 : 054-650-608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을 “예천군”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단체”를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출향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 공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행정 기관”을 “예천군”으로 한다.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친절공무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은 예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적극적인 친절행정을 실천하여 공직사회 내 친절분위기 확산과 친절서비스 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8조의5(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2. 퇴직(정년, 명예, 조기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군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공로상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 상패, 상금, 상품권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8조의5제2호의 경우 퇴직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5”로, “실과 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본청에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및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중 “규칙으로써”를 “규칙으로”로 한다.

별지 제3호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공 로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공 로 문)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예천군</u> ----- ----- -----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u>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u> 및 <u>단체</u> 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 ----- <u>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출향인</u> ----- ----- -----.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u>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u>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u>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친절 공무원 포상, 공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u>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u>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 ----- <u>예천군</u> ----- ----- ----- -----.

1. ~ 3. (생략)

<신설>

<신설>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4(친절공무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은 예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적극적인 친절행정을 실천하여 공직사회 내 친절분위기 확산과 친절서비스 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8조의5(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2. 퇴직(정년, 명예, 조기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군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공로상은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 상패, 상금, 상품권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8조의5제2호의 경우 퇴직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 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본청에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한다.

<신설>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5-----

----- 실·

과·소장 및 읍·면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본청에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④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써 정한다.

가 임명하며, 간사는 행정팀장
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
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및 전자심의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
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4조(시행규칙) -----
----- 규칙으로
-----.

입 법 예 고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예 천 군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피해방지단에
게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평가 :

5. 의견제출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oyjks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181, 팩스 054-650-6189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예방하기”을 “방지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포획보상금”을 “포획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예천군 관내에서”를 “예천군 관내에서 농업인이”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피해보상 제외대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또는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제3항”을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예방”을 “방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피해방지단”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포획보상금 지급 및 방법)”을 “(포획포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와 포획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포획포상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농업인”이란 <u>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u> 자를 말한다.	3.-----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2호에 <u>해당하는</u>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피해방지단”이란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u>예방하기</u> 위하여 구성된 관내 모범엽사를 말한다.	5.----- ----- ----- <u>방지하기</u> ----- -----.
6.“ <u>포획보상금</u> ”이란 피해방지단이 지정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u>지급되는 보상금</u> 을 말한다.	6.“ <u>포획포상금</u> ”----- ----- --- <u>지급하는 포상금</u> -----.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① <u>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예천군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u>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① <u>예천군 관내에서 농업인</u> 이 ----- ----- ----- <u>예산</u> -----

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발생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 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생략)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고서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삭 제>

제3조의2(피해보상 제외대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

③ 군수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
금 신고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실태 정밀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농지의 경우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제9조(피해방지단 운영) 군수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관내 모범엽사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획보상금 지급 및 방법)

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또는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
 ---- 제4조제2항 및 제3항----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피해방지단 운영) -----
----- 방지 -----
----- 법시행규칙 -----

피해방지단-----
-----.

제10조(포획포상금 등) ① 군수는

① 포획보상금은 제9조의 피해
방지단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획보상금을 지급하
고자 하는 경우 지정한 야생동
물별 마리수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수렵보
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와 포획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포획포상금-----

-----.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				처리기간	
				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조 사 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예천군 읍·면			
	④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개황	⑤ 피 해 자 성 명				
	⑥ 피 해 지 역	예천군 읍·면 리 번지			
	⑦ 피 해 내 용		⑧ 가 해 야 생 동 물		
피해면적산정	⑨ 피 해 면 적	(㎡)	⑩ 피 해 지 역 사 진	“첨부”	
피해액 감정	⑪ 피 해 액 산 정 방 법				
	※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⑫ 산 정 내 역				
	⑬ 피 해 액				
피해보상금 산 정	⑭ 보 상 금 산 정 율				
	⑮ 피 해 보 상 금				
기타조사의견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휴대폰 :)
	주 소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	포획활동기간	~
	포 획 장 소	
	포획야생동물 종류 및 수량	
	사체처리	자가소비(마리), 매립(마리), 기타()
유해야생동물	성 명	
포획 의뢰인	주 소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2. 출동대장 1부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⑧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렵 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와 포획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경상북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운영 지침(2019.1.3.)」에 의한 포획포상금 지급 및 재료비 등의 경비는 실비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수렵장운영 수입	-	70,000	-	-	-	70,000
	소계(a)	-	70,000	-	-	-	70,000
세출	수렵보험료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료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포획포상금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소계(b)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 총 비용(a-b)		-140,000	-70,000	-140,000	-140,000	-140,000	-63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도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군비	128,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640,000
합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5. 부대의견

6. 작성자 : 환경관리과 오서영(☎ 650-618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 4년마다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수입 발생(70백만원 정도/4년)

2. 세출

- 수렵보험료, 재료비 : 실비 기준

- 포획포상금 : 「경상북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운영 지침(2019.1.3.)」 기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예 천 군



1. 개정 자치법규

- 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선7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의 조정

- 총무과 명칭변경 및 직급상향조정 (안 제3조)
 - 총무과(행정5급) ⇨ 행정지원실(4급·행정5급)
- 부서간 업무이관 (안 제3조)
 - 공단조성업무 : 도시과 도시활성화팀 ⇨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팀

나. 정원의 증원

○ 정원의 총수 : 671명 ⇨ 686명 / 증 15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75명 / 증 1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변동 없음)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안 별표 2)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0.7%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24%이내	15%이상	0.3%이내
개정안	0.8%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24%이내	14.7%이상	0.5%이내
증 감	+0.1%					-0.3%	+0.2%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671	330	11	102	31	197	
개정안	686	343	11	104	31	197	
증 감	+15	+13	-	+2	-	-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안 별표 3)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633	1	1	3	29	154	181	150	113	1
개정안	646	1	1	4	28	158	190	150	111	3
증 감	+13	-	-	+1	-1	+4	+9	-	-2	+2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지도직 (안 별표 3)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38	-	7	3	28
개정안	40	-	7	3	30
증 감	+2	-		-	+2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shinzx@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총무과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 054-650-6837, 팩스 : 054-650-608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4조”를 “제120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차목 및 카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농공단지 조성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카. 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를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예천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⑦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⑧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⑨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⑩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⑫ 예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⑬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⑭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희망복지지원담당”을 “희망복지지원팀장”으로 한다.

⑮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⑯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⑰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건축도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20조----- ----- ----- ----- ----- ----- -----.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u>총무과</u> ,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를 둔다.	제3조(실·과의 설치) ① ----- ----- ----- <u>행정지원실</u> ----- ----- ----- ----- ----- -----.
② 실·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총무과장</u>	3. <u>행정지원실장</u>
가. ~ 차. (생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새마을경제과장	5.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차. 농공단지 조성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카. 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차. · 카. (생 략)</u>	<u>타. · 파. (현행 차목 및 카목과 같음)</u>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12. 도시과장	1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농공단지 조성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바. 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사. (생 략)</u>	<u>마. (현행 사목과 같음)</u>
<u>아. (생 략)</u>	<u>바. (현행 아목과 같음)</u>
13. · 14. (생 략)	13.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4조(설치) ①----- ----- -- 「지역보건법」 제10조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제10조-----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71명”을 “68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60명”을 “675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u>0.8%이내</u>	5%이내	25%이내	30%이내	24%이내	<u>14.7%이상</u>	<u>0.5%이내</u>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3%이내	87%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총계	686	343	11	104	31	23	174
정무직계	1	1	-	-	-	-	-
군수	1	1	-	-	-	-	-
일반직계	645	338	11	72	27	23	174
4급	1	1	-	-	-	-	-
4급내지5급	4	3	-	1	-	-	-
5급	27	11	3	-	1	1	11
5급내지연구관또는지도관	1	-	-	-	1	-	-
6급이하	609	321	8	70	25	22	163
전문경력관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
전문경력관다군(사진·영상촬영)	2	2	-	-	-	-	-
별정직계	-	-	-	-	-	-	-
6급상당이하	-	-	-	-	-	-	-
연구직계	7	4	-	-	3	-	-
연구사	7	4	-	-	3	-	-
지도직계	33	-	-	32	1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30	-	-	29	1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71명</u>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686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660명</u>	1. ----- <u>675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

※ 정원조정 내역 : 686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633	1	1	3	29	154	181	150	113	1
개정안	646	1	1	4	28	158	190	150	111	3
증 감	+13	-	-	+1	-1	+4	+9	-	-2	+2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38	-	7	3	28
개정안	40	-	7	3	30
증 감	+2	-		-	+2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2019년 부터 2023년까지 약5,552백만원 재정지출 예상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세 입 (백만원)	-	해	당	없	음	-
세 출 (백만원)	136	837	858	880	902	3,613
총비용 (백만원)	-136	-837	-858	-880	-902	-3,613

※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 2.5%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 비		136	837	858	880	902	3,613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36	837	858	880	902	3,613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수현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 816,348천 원/연간

구 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연간 총인건비 (천원)	비고
합 계		816,348	
4급 +1명	8,355천원 × 12월 × 1명 (연봉제 기본급 평균 7,112천원 / 각종수당 1,243천원)	+100,260	
5급 -1명	7,620천원 × 12월 × 1명 (5급 기본급 평균 6,551천원 / 각종수당 1,069천원)	-91,440	
6급 +4명	5,796천원 × 12월 × 4명 (6급 기본급 평균 3,876천원 / 각종수당 1,920천원)	+278,208	
7급 +9명	4,474천원 × 12월 × 9명 (7급 기본급 평균 2,876천원 / 각종수당 1,598천원)	+483,192	
9급 -2명	2,462천원 × 12월 × 2명 (9급 기본급 평균 1,636천원 / 각종수당 826천원)	-59,088	
지도사 +2명	4,384천원 × 12월 × 2명 (지도사 기본급 평균 2,464천원 / 각종수당 1,920천원)	105,216	

※ 2019년 6월 인건비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비용 산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